#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92

발의연월일 : 2024. 7. 30.

발 의 자:이재정・민병덕・강유정

박지원 • 민홍철 • 강준현

박홍배 · 임호선 · 안태준

김영호 · 강경숙 · 백혜련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1항 중 "7일"을 "30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던 자가 해당 영업을 각각 폐지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제2	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
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	
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	
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	
폐지한 날부터 <u>7일</u> 이내에 문	<u>30일</u>
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	
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	
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	
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